

주민조례청구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 공표

「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」 제6조((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) 제2항 및 「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」 제5조(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) 제2항에 따라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」 제정 청구의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.

2023년 11월 1일

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



- 청구 조례명: 「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」 제정
- 청구인의 대표자: 안숙현(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15길)
이나리(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16길)

3. 대표자증명서 발급일: 2023. 11. 1.(수)

4. 청구 취지 및 이유

- 서울특별시 광진구에서 실시하는 급식에 유해물질과 유전자변형식품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유아, 청소년 및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
- 광진구의 학교, 유치원, 어린이집, 사회복지시설, 공공기관 등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에 방사성 물질, 유전자변형식품, 유해물질 등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

5. 서명요청기간: 2023. 11. 1.(수) ~ 2024. 1. 31.(수)

6. 정보시스템 서명(서명취소)방법

- 인터넷 검색창에 "주민e직접"을 검색하거나 주민e직접(juminegov.go.kr) 주소에 접속하여 개인정보 인증한 후 서명하거나 서명 취소할 수 있음

7. 행정사항

- 기타 본 공고와 관련하여 문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의회 의사팀(02-450-1446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